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. 2. 8 선고 2021가단130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1. 11.

판 결 선 고 2022. 2. 8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0. 9. 21.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26,716,4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6,716,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이랑

별지